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. 5. 10 선고 2018가단1095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엠케이

담당변호사 문종술,문상윤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9. 4. 12

판결 선고 2019. 5. 10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. 5.19. 접수 제71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아래에서는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의 소유 자이다.

나. 원고는 2000. 5. 18.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,000만 원인

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,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. 5.

19. 접수 제71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(아래에서는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고 한다)를 하여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없는 사실,갑 제호증의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판 단

가.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.
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,증명이 없으므로,그피담보채권은
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상당하다.
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2000. 5. 18. 또는 이 사건
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00 . 5. 19. 성립되었다고 보이고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
명백하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시효로 소멸하였다.

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,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부탁으로
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담보할 목적으로이 사건 근저당권을
설정한 것이고,피고가 2011. 5. 6.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
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취지로
주장하나,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.

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현의선

별지